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안)

□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5조(설명회의 개최)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 략)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8. 22. (목) 17:30 ~

○ 장 소 :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
-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설명회의 개최)

□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7 : 30	17 : 35	▶ 설명회 개요 및 내빈 소개	산단지원팀장
17 : 35	17 : 40	▶ 인사말씀	기업지원과장
17 : 40	18 : 00	▶ 재생사업계획(안) 설명	도화엔지니어링
18 : 00	18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	건영ENC
18 : 10	18 : 55	▶ 재생사업계획(안) 의견수렴	다함께
18 : 55	19 : 00	▶ 마무리말씀	기업지원과장

※ 기업인 및 근로자 의견수렴 시간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